

제 569 호
1976. 8. 6.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060 호 : 서울특별시암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
징수조례 3

제 1061 호 : 서울특별시암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4

◎ 고 시

제 183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7

제 184 호 : 도시계획용도지구 (보존지구) 결정지적승인 및
건축제한고시 8

제 186 호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변경결정및지적승인..... 9

제 187 호 : 도시계획 (재개발사업) 사업시행허가..... 10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0802

제 188 호 :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	10
제 18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지적승인.....	12
제 190 호 : 도시계획사업 (특수녹지대건설) 실시계획인가.....	13

◎공 고

제 182 호 : 1976 년하천골재채취허가에정지추가공고.....	19
제 184 호 : 마포경찰서장 직인개각공고.....	19
제 185 호 : 생계진열판매행위금지공고.....	20
제 186 호 : 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인가및분양지지정공고.....	20
제 187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 공고.....	21

◎사 명 21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암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 8. 6

◎ 서울특별시조례 제 1060 호

서울특별시암사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 127 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75 조 및
서울특별시 암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하 "구
획정리"라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중
이조례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구획정리지구내 또는 인접지구내의
토지소유자로 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부담금부과총액) 부담금의 부과
총액은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소요되

는 경비중 다음 각호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조금
2. 체비지 (보류지포함) 매각수입
3. 기타수입

제 3 조 (부담금 부과기준) ① 부담금은
구획정리사업인가 전과 환지지정
당시의 토지평가액의 증차액 또는
환지지정 면적의 비례에 의하여 부
과한다. 토지평가액 결정은 정부에
서 조사 결정한 부동산 고시가격
및 현재 매매 선례를 표준으로
하여 등적선 방법에 의하여 산출
하되 환지 처분시에는 노선가산출
방법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부담금감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있다.

1.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에 상당한 토지등 제공하였을 때

2. 구획정리를 위하여 노역이나 물
진을 제공 하였을때

3. 지방세법 제 184 조의 규정에 해
당될때

제 5 조 (납입방법) 부담금의 부과시기,
납입기간, 납입방법, 납입장소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 (정산) 구획정리로 인하여 수지
정산액에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부담
금을 추징하거나 또는 환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시행세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암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76. 8. 6

◎ 서울특별시조례제 1061 호

서울특별시암사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
리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3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 암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구의범위) 이 지구는 암사토
지구획정리지구라 칭하고 사업시행지
구 (이하 "지구"라 한다)의 범위는
강남구 암사동, 천호동각일부 1,607,102
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비) ①이 사업에 소요되
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에 부
족이 있을때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법제 75 조 및 영제 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 (이하 "부담금"
이라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 4 조 (중전토지) 환지에전지 지정 또
는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중전토지
의 각필지의 면적은 법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 현재의 토지에장

및 임야대장면적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여 별도로 실측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한것은 그 면적에 의한다.

제 5 조 (토지의 가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각필의 가격평가는 한국감정원 토지평가사 또는 공인감정사의 감정 및 그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고저, 교통환경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 6 조 (토지의 관리) 시장이 환지에정지를 지정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환지에정지불 지정받은자는 환지에정지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보수 유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증명 및 분할) 사업기간내에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 8 조 (환지계획의 기준) ①지구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주위에 의하여 법제 48 조내지 제 54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종전토지 또는 그 위치근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 3 항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공용지 및 집단체비지 지정으로 인하여 원위치 근처에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위치로 지정할 수 있다.

③법제 32 조에 의한 인가일에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기존 건물들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 2 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체비지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이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실시계획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 3 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증환지 또는 감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유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증환지 또는 감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증환지된 경우에는 제 5 조에 의한 결정가격에 의하여 금전으로

정수한다.

⑥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대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이 사업 계획공고 기간내에 중환지 신고가 있을시는 특별히 중환지불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5 항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⑦기존 건물에 따른 전면도로가 사업계획상 도로로 될 경우에는 가산 및 연도부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 전면도로가 확장되었을 때에는 확장된 평균 폭원의 2분의 1을 연도부담으로 한다.

⑧공통 부담일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를 형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차등을 두어 부담할 수 있다.

- 1. 1 급지 : 공부상 대지 또는 기존 건물이 점유한 토지
- 2. 2 급지 : 공부상 전인 토지
- 3. 3 급지 : 공부상 담, 임야, 잡종지 등인 토지

4. 4 급지 : 공부상 소지

5. 5 급지 : 공부상 또는 현황상 도로구거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고 있는 토지

제 9 조 (가환기 예정지시정) 공공시설물의 설치물 위하여 설치예정지내외 기존건물 및 공작물의 이전등을 필요로 할 때에는 법제 56 조에 의한 환지에정지 지정에 앞서 가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청산기준) ①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로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환지의 평가가격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제 68 조에 의거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할 때에는 청산금액에 연 3 할의 율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다.

제 11 조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한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사업시행상 필요로한 경우에는 공사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일부 환지처분 할 수 있다.

제 12 조 (동거완료후의 공저) 시장
은 토지구획정리의 등기가 종료되
었을 때에는 환지실명서의 초본과
지가배부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
가배부서의 초본을 첨부하여 토지
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 13 조 (대리인 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
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4 조 (토지소유자의 자비시공)
①법 제 99조에 의하여 토지소유
자 등이 자비시공을 하고자 신청
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에 맞추
어 시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계획준공이 되었을 때에는
공통부담을 제감 적용할 수 있다.

제 15 조 (규칙개정) 이 조례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83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5 호
(76. 6. 21) 로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당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6 호
(74. 1. 5)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이를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동대문구 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지
합니다.

1976. 8. 9

서울특별시장

<p>1. 사업시행지 : 동대문구 회기동 산 4-1 동대문구 이문동 264-202</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경희대학교</p> <p>3. 면적 및 규모 : 8,724 ㎡</p> <p>4. 시행자 주소, 성명 : 동대문구 회기동 산 1 학교법인고황재단 이사장 오정명</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76. 8. 나. 준공예정일 : 77. 7.31</p> <p>6. 위치 및 계획 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p> <p>7. 공사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동대문 구청에 보관함.</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84호</p> <p>도시계획용도지구 (보존지구) 결정 지적승인 및 건축제한 고시</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용도지구 (보존지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 제 13조와 대통 령령 제 7753 호 (75. 8.22) 행정 권한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도시계획용도 지구 (보존지구)에 대하여 도시계 획법 제 19조 제 3항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출장소) 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6. 8. 10 서울특별시장</p>
---	--

가. 도시계획용도지구 (보존지구) 결정 및 지적 승인조서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보존지구	강남구 장지동 문정동 일부	1,415,040 ㎡	

3. 보존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 제한

가. 건축물 건축시의 제한

- (1) 용적율 : 20%이하
- (2) 건폐율 : 20%이하
- (3) 최소대지면적 : 1,200㎡이상
- (4) 건축물높이 : 2층이상 불가 (7m미만)

나. 모타 및 교주파 발생장치가 설치되는 공장의 건축

다. 시설물에 대한 제한

- (1) 고압선 및 모타회전을 위한 3상선의 전력선 시설
- (2) 가공선로(철조망, 송신용 안테나 및 기타 철선)로써 길이 10m이상의 시설
- (3) 매설되는 일반 가정용을 제외한 수도관, 가스관, 전력용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의 시설
- (4) 용량 2,000℔이상의 물탱크 지상 설치
- (5) 굴뚝 철계 계층 및 콘크리트 석조 등의 탑으로서 높이 10m이상의 시설
- (6) 기타 전파 장애 요인이 내포된 시설물 등

○ 서울특별시고시제186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결정및지적승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434호(73.11.8)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용산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6. 8. 11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변경(폐지)	운동장(정구장)	용산구이촌동302-63	1,274㎡	

※ 별첨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7 호
 도시계획 (재개발사업) 사업시행허가
 1. 건설부 고시 제 104 호 (76.7.14)
 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1 호
 (76.8.4) 로 재개발지구 결정 및
 지적 고시된 청계천 7 가 1.2
 재개발지구 에 대한 재개발 사업

시행은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 및 행정권한
 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행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

1976. 7.
 서울특별시장

<시행내용>

지구명	위치	지정면적	시행면적	시행자
청계천 7 가 제 1 재개발 지구	시내 중구 신당동 220-17번지 일대	3,517 (1,063.9 평)	3,507 (1,062.8 평)	시내 중구 신당동 220-4지구 대표 용인개발주식회사
제 2 재개발 지구	시내 중구 신당동 217-15번지 일대	810 (245 평)	768 (231 평)	대표 이사 윤영갑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8 호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2 호
 (76.7.13) 로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된 당시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
 시설)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 및 보건사회국 의
 약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6. 8. 12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강남구내곡동 산 12-425 일대
-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종합 의료시설)
 명 칭 : 시립아동병원

<p>3. 면적 및 규모</p> <p>총면적 31,373 ㎡</p> <p>대지조성면적 12,913 ㎡</p> <p>병원신축 1동 1,257.1 ㎡ (면적 5,203.65㎡)</p> <p>간호원기숙사 1동 200 ㎡ (면적 200 ㎡)</p> <p>부속건물 1동 35.5 ㎡</p> <p>4.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시장</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p> <p>가. 착수년월일: 1976.8. .</p> <p>나. 준공예정년월일: 1977.9.30</p> <p>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변칙</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변칙</p>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강남구내곡동	산 12-425	임야	8,589㎡	우순필	근저당권, 경매신청, 가등기권
"	6-6	건	14	문화재관리국	
"	6-7	"	399	김상득	
"	6-28	"	109	정예진	
"	6-27	"	170	문화재관리국	불하 년부금 분납승인
"	6-29	"	35	"	"
"	6-23	"	81	"	"
"	6-35	"	40	"	"
"	6-30	"	75	"	"

토지또는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강남구 내곡동	산12-425	임야	8,589 ^평	동대문구계기동 682	우순필	종로구경운동88	수업중의회	근저당권
						동대문구계기동 631	원병태	
						동대문구계기동 631	홍신자	
	6-6	전	14 ^평	종로구창성동 117	문화재관리국			
	6-7	"	39 ^평	강남구양재동 5-272	김상득			
	6-28	"	10 ^평	서대문구신사동 2-17	정예진			
	6-27	"	17 ^평	종로구창성동 117	문화재관리국	전북김제군백산면 상정리 62	이동섭	
	6-29	"	35 ^평	"	"	도봉구미아동 579-20	최남훈	
	6-23	"	81 ^평	"	"	"	"	
	6-35	"	4 ^평	"	"	"	"	
6-30	"	75 ^평	"	"	"	"		

◎ 서울특별시 고시제 18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변경 지적 승인

1. 건설부 고시제 2948 호(66.12.17)로 지적승인된 당시 관내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부 변경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

부 고시제 123 호(73.4.4)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시도시계획과와 구획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8. 12

서울특별시장

0 지적 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지적변경연장	지적변경기점	지적변경총점	비 고
기정	중로	1류	47	20m	810m	미아동 791	수유동 472	
변경	위치변경

별첨 도면표시와갈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0 호

도시계획사업 (특수 녹지대
건설) 실시 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9 호 (76.3.24)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특수 녹지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국 도시가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6.8.12

서울특별시 장

사업 개요

가. 사업시행의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산 53 의 1 의 97 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특수 녹지대

다. 사업 규모 : 1) 입지 :

362,580 ㎡

2) 1차 조성범위 :

253,776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장

마.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1) 착공 :

76. 8. 15

2) 준공 :

77. 5.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토지조서

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와

지수용법 제 4 조 3 장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토지조서. 끝.

토지세목 및 소유자또는 이해관계인조사

1976. 3.20 현재

번 호	원			수 용			소유자또는이해관계인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구 분	주 소	성 명	
1	성산동산92	압야	0.8400평				소유	외정부시의정부동 196	정익모	
2	성산동산53-1	"	5.9321	좌동	좌동	34.515평	공유	종로구화동 137-5 종로구명륜3가 121-2 종로구명륜3가 2-8	백운석 정두희 이봉우	
3	" 53-2	"	0.1300	"	"	좌동	소유	서대문구대현동 90-9	안구호	
4	" 53-5	"	0.8310	"	"	"	공유	종로구화동 137-5 종로구명륜3가 121-2 종로구명륜3가 2-8	백운석 정두희 이봉우	
5	" 53-6	"	5.0000	"	"	638평	소유	용산구청과동 3가 118-28	박철용	근처당 잔입액 충무리가 53-1
6	" 53-7	"	5.5115	"	"	좌동	소유	광주시호남동 23	이은용	
7	" 53-8	"	0.6614	"	"	"	공유	충구역장동 6-12 종로구동숭동 2-10	백철 김윤태 김윤구	
8	" 54	"	0.4600	"	"	"	소유	마포구이현동 331-27	백갑진	가동기 잔입액 331-27 진애기
9	" 55	"	0.0300	"	"	"	"	개성부부근정	김시현	
10	" 56	"	0.7700	"	"	"	소유	서대문구북아현동 163-48	최만휴	
11	" 57	"	1.0800	"	"	"	"	서대문구창원동 67-13	백봉현	
12	" 58	"	2.9100	"	"	8,049평	"	용산구효창동 5-17	최진준	
13	상암동산 18	"	1.1612	"	"	91평	"	마포구이현동 417-4	오한영	가동기 잔입액 417-4 이진애

번호	원			수 용			소유자또는이해관계인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구 분	주 소	성 명	
14	상암동산4-15	입야	0.6902	좌동	좌동	좌 동	소유		권국현	
15	" 4-17	"	1.0207	"	"	"	"		권신림	
16	" 4-19	"	0.1004	"	"	"	"		권국현	
17	" 4-20	"	0.0622				"	마포구이현동 417-4	오한영	가등기 상암동소문 동4가152-2
18	" 4-23	"	1.8203	좌동	좌동	1.219 평	"	성동구신당동 353-60	홍숙향	이 선 배
19	" 4-24	"	1.8911	"	"	좌 동	"		국(국배)	
20	" 4-63	"	0.0118	"	"	"	"		갈현배	
21	" 4-64	"	0.0524	"	"	"	"		"	
22	" 4-123	"	0.0322				"	성동구신당동 253-60	홍숙향	
23	" 4-124	"	0.0202				"	마포구상암동산 4-11	김명수	
24	" 4-125	"	0.0126				"	" " 산 4-125	박승현	
25	" 4-126	"	0.0227				"	성동구신당동 353-60	홍숙향	
25	" 4-128	"	0.0100				"	마포구상암동산 4-128	심은자	
27	" 4-129	"	0.0127				"	" " 4-129	선택회	
28	" 4-146	"	0.0021				"	" " 4-129	김도기	
29	" 4-147	"	0.0014	좌동	좌동	좌 동			갈현배	
30	" 4-177	"	0.0413	"	"	"			국	
31	" 4-176	"	0.0406	"	"	"			"	
32	상암동산 4-1	전	487 평				소유	종로구이화동산 9-69	현정호	
33	" 51-2	답	46 평				"	"	"	
34	" 51-3	전	103 평				"	용산구이태원동 271	김귀동	
							"	군인아파트 10동 503호		
35	" 51-4	답	39 평				"	마포구성산동 472	이귀성	
36	" 51-5	전	431 평			좌 동	"	" " 496	강인범	

번호	원			수용			소유자또는이해관계인			비고
	지번	자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구분	주소	성명	
37	상동511-6	담	623명				소유	상동구현인동711-229	김정식	
38	" - 7	전	103 "	과동	과동	과동	"	마포구성산동 496	강인범	
39	" - 8	"	140 "	"	"	"	공유	서대문구중동 58-13	이만례	
								"	장애자	
								"	장순애	
40	" - 9	담	33 "	"	"	"	소유	" " 58	장윤석	
41	" - 10	대	452 "	"	"	"	"	용산구한남동 759-9	권병호	근저당, 자상원, 물리토2가, 11년국, 상업은행
42	" - 11	전	73 "	"	"	"	"	마포구성산동 479	이재종	
43	" - 12	"	54 "	"	"	"	"	종로구화동 137-5	백윤석	
44	" - 13	"	80 "	"	"	"	"	마포구성산동 479	정인봉	
45	" - 14	"	"	"	"	"	"	"	한학수	
46	" - 15	잡종지	189 "	"	"	"	"	영등포구화동 253-96	최윤석	
47	" - 16	전	380 "	"	"	"	"	서대문구성산동 496	강인범	
48	" - 17	"	596 "	"	"	"	"	종로구화동 137-5	백윤석	
49	" - 18	"	677 "	"	"	"	"	서대문구성산동 479	정인봉	
50	" - 19	"	212 "	"	"	"	"	" " 146	박영준	
51	" - 20	"	527 "	"	"	"	"	" "	"	
52	" - 21	"	431 "	"	"	"	"	" " 479	강금복	압류: 서울시
53	" - 22	"	124 "	"	"	"	"	종로구화동 137-5	백윤석	

번호	원			수용			소유자또는이해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구분	주소	성명	
54	성산동511-23	전	361	좌동	좌동	좌동	소유	송로구좌동 137-5	백윤석	단장 남대 문로2가5: 한주원
55	" " -24	"	286	"	"	"	"	" " "	"	
56	" " -25	"	286	"	"	"	"	" " "	"	
57	" " -25	"	307	"	"	"	"	서대문구성산동 49	이귀성	
58	" " -17	"	355	"	"	"	"	영등포구고척동 123	김효배	
59	" " -28	잡종지	177	"	"	"	"	용산구용산동 2가 8	이천국	
60	" " -29	"	145	"	"	"	"	마포구성산동 511-29	유한수	
61	" " -30	전	100	"	"	"	"	영등포구영등동 6가 65	김영석	
62	" 512-1	대	316	"	좌동	좌동	"	마포구노고산동 31-8	황외경	
63	" " -2	전	248	"	"	"	"	" " 498	정일찬	
64	" " -3	"	446	"	"	"	"	" 성산동 505	조길성	
65	" " -4	"	646	"	"	"	"	" " 479	이재송	
66	" 513-1	"	591	"	"	"	"	성동구행당동 322	권수자	
67	" " -2	"	721	"	"	"	"	송로구궁정동 1-2	박무신	
68	" " -3	하천	301	"	"	"	"	"	한학수	
69	" 514-1	답	151	"	"	"	소유	송로구궁정동 1-2	박무신	
70	" " -2	전	343	"	"	"	"	마포구성산동 496	강인빈	
71	" " -3	답	41	"	"	"	"	" " 498	정일찬	
72	" " -4	전	228	"	"	"	"	" " 479	이재송	
73	" " -5	"	158	"	"	"	"	송로구좌동 9-49	원정호	

번 호	원			수 용			소유자또는이해관계인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구 분	주 소	성 명	
74	성산동 515-5	답	1,097				소유	마포구성산동 498	정인찬	
75	" 515-11	"	1,272				"	우천동 127-26	정인만	
76	" 515-12	"	334				"	마포구성산동 479	이귀성	
77	" 515-13	"	1,011				"	용산구갈월동 33-2	윤일현	
78	" 515-14	"	2,416	좌동	좌동	좌 동	"	마포구성산동 26-2	김석원	
79	" 515-15	대	182	"	"	"	"	마포구성산동 53 " 515-15고 석원 " " 김정삼 서대문북사과 178-3	김문수	
80	" 515-16	답	1,191				"	마포구성산동 498	정인찬	
81	" 515-17	전	44				"	" 505	조길성	
82	" 515-18	답	1,349				"	종로구궁정동 1-2	박무신	
83	" 516	"	629				"	성동구행당동 322	권청자	
84	" 517-1	전	62	좌동	좌동	좌 동	"	서대문구연희동 5	김명섭	
85	" 517-2	대	61	"	"	"	"	용산구용산동 2가 8	정영석	
86	" 517-3	"	118	"	"	"	"	"	정영석	
87	" 517-4	"	20	"	"	"	"	"	국 (국세청)	(도)
88	" 518-1	"	85	"	"	"	"	"	정영석	
89	" 518-2	전	50	"	"	"	"	마포구성산동 479	이재중	
90	" 519-1	잡종지	1,071				"	" 213	안민식	
91	" 519-2	전	109	"	"	"	"	" 496	강인범	
92	" 519-3		약 140	"		140				도로

번호	원			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구분	주소	성명	
93	성산동 520-1	대	767	좌동	좌동	좌동	소유	서대문구연희동 537-3	조병욱	
94	" 520-2	전	619				"	마포구성산동 498	정인범	
95	" 521	"	180	좌동	좌동	좌동	"	" " 505	조길성	
96	" 522-2	대	142	"	"	"	"	" " 505	조길성	
97	" 524	전	409				"	" 상암동 54-20	이승훈	
98	상암동 48	"	198				"	종로구 누하동	윤상덕	
99	성산동 512-5	"	277	좌동	좌동	좌동	"	마포구성산동 505	조길성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182 호

1976년 하천골재 채취 허가 예정지 추가 공고

서울특별시 1976년 하천골재 채취허가 예정지 추가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6. 8. .

서울특별시장

1. 하천명 : 한강 (서울특별시관내)

2. 지역및면적 : 가양지구 20,000평 (39,150㎡)

3. 지역위치도 : 별첨도면과 같은

4. 위치도열람 : 양서 출장소



◎ 서울특별시 공고제 184 호

마포경찰서장직인개각공고

마포 경찰서장 직인을 다음과 같이 개각하였기 관인 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

1976. 8. .

서울특별시장

<p>1. 개각사용일시 : 76.8.12 00:00</p>	<p>2. 직인의 인영 : 마포경찰서장 직인</p>
<p>제 기 직 인</p>	<p>개 각 직 인</p>
	
<p>◎ 서울특별시공고제 185 호</p> <p>생계진열판매행위금지공고</p> <p>축산물가공처리법제 15조 (수급조절) 규정에 의거 생계진열판매행위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p> <p>1976.8.11</p> <p>서울특별시장</p> <p>가. 목적 : ○ 닭고기유통질서확립 ○ 공중위생상 위해발생방지 ○ 밀도계방지</p> <p>나.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p> <p>다. 실시기간 : 76.8.11 이후계속실시함</p> <p>라. 위반자조치 : 축산물가공처리법제 15조 위반으로 동법제 22조 적용조치함.</p> <p>마. 본공고는 농수산부장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제 15조 조치에 따른 공고임.</p>	<p>◎ 서울특별시공고제 186 호</p> <p>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인가및 분양지 지정 공고</p> <p>1.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면적 제 1, 2 구역내 일부분양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공고제 162 호 (76.7.20) 로 공람공고한바있는 분양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86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조 및 제 55조와 건설부고시 제 302 호 (74.9.6)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조에 따라 분양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동법제 34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2. 분양지 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관할 구청에 비치하고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3. 본 공고에 대한 서류중달은
토지점유자에게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 가름
한다.

1976. 8. 12.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187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지정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기 이를 공고 한다.

1976. 8.

서울특별시장

1. 지정 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6년수출목표액
1020	대일산업(주)	각영민	도봉 수유동 367-1	저지하이라일	\$1,931,000
979	홍안공업사	심용규	영등포 독산 1-8	뉴시대부속품	\$400,000

사 령

○ 1976. 8. 6

중기관리 지방기계 송백근
사업소 기사보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제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영선과 지방기계 실천구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

녹지과 지방농림 강희규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제 1
.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축 산 물 위생검사소 지방수의원 이 명의
복직을 명함.

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제 1,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6월
에 처함.

판 악 구 지방농림 이 의성
기 사

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제 1,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월
에 처함.

영 등 포 구 농림기사 윤 강배

국가공무원법제 78조제 1항제 1,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월에
처함.

녹 지 파 지방농림 유원준
기 원

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제 1,
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도 봉 구 지방농림 성 태식
기 사

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제 1,
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강 남 구 지방농림 황형구
기 사 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
제 1, 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
에 처함.

서 대 문 구 지방농림 윤명식
기 사 보

중 구 지방농림 임영택
기 원

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제 1,
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도 봉 구 지방농림 김일근
기 사 보

구의수원지 지방토목 김형분
사 무 소 기 과

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제 1,
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의함.

지방농림 나경문
지원보시보

판악구 근무를 명함.

지방농림 오대근
지원보시보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방농림 정봉택
지원보시보

성동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 우건계
지원보시보

중구 근무를 명함.

◎ 1976. 8. '10

공 원 과 지방농림 윤태경
기 사 보

조경과 조경 2계장에 포함.

<p>관악구 지방농림 기 관 공원과 공원관리계장에 포함.</p>	<p>이백근</p>	<p>영등포구 지방행정 허 사무관 둔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p>
<p>의림이 지방농림 관악구 근무를 병합.</p>	<p>이용재</p>	<p>도봉구 지방행정 김영길 주사보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제 1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p>

서울특별시